■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[별지 제22호서식] <개정 2013.3.23>

품질검사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30일

신청인	대표자 성명	주민등록번호(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)
	주소	
	상호	전화번호
	사업자등록번호(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만 기재함)	
	소재지	

	검사 분야	검사 유종
검사 분야 및 검사 유종	[ ] 석유제품 품질검사	
	[ ]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	
	[ ] 석유대체연료 품질검사(성능평가 제외)	
	[ ] 자동차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	
	[ ] 보일러용 석유대체연료 성능평가	

「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」 제2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	수수료
1. 정관 1부 2. 사업계획서 1부 3. 검사인력 및 검사시설 보유 현황 자료 1부 4. 공인 시험·검사기관 인정서 1부	법인 등기사항증명서	없음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→	접 수	→	검 토	→	결 재	→	시 행	→	지정서 발급
신청인		산업통상자원부 (석유산업과)		산업통상자원부 (석유산업과)		산업통상자원부 (석유산업과)		산업통상자원부 (석유산업과)		

210㎜×297㎜(백상지 80g/㎡)